

# 앰허스트로 가는 길\*

이국윤\*\*

## 목 차

- I. 예일 로스쿨 단상(斷想)
- II. 왜 앰허스트 칼리지였는가?
- III. 오스틴 새릿
- IV. 비판법학자(기초법학자)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 V. 자유인의 학문으로서의 법(Law as Liberal Art)

## [국문 요약]

이 글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한 뒤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비판법학으로서의 기초법학연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답하려고 한다. 저자는 지난 20여 년 간 미국에서 학부교양법학을 무대로 법학연구의 새로운 장을 모색하고 있는 앰허스트 칼리지의 오스틴 새릿 교수를 찾아가는 기행문의 형식으로 이 문제가 저자 자신을 포함한 대한민국 기초법학연구자들 전체의 실존적 고민과 직결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인터뷰이와의 대화내용에서 저자는 ‘학문의 자유’라는 근원적인 모토에 더욱 충실하려는 것만이 법학전문대학

\* 이 연구는 2008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지원번호: KRF-2008-A-003-0080

\*\* 한동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원

원 체제의 위기에 대응하는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비판법학으로서 기초법학연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 가운데 저자 자신의 실존적 선택은 ‘자유인의 학문으로서의 법(Law as Liberal Art)’을 기치로 학부 차원에서 학술적 교양법학과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저자는 2007년 이후 한동대학교 법학부를 무대로 그와 같은 실험을 진행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점 몇 가지를 피력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

[주제어] 법학교육, 기초법학, 비판법학, 교양법학, 학부법학, 학부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앰허스트 칼리지, 오스틴 새릿

## I. 예일 로스쿨 단상(斷想)

10월말의 뉴잉글랜드는 천지가 오색 단풍이었다. 뉴헤이븐에서 노스햄프턴으로 올라가는 91번 주간(州間)고속도로는 마치 단풍나라로 끝없이 이어진 진입로 같았다. 시속 80마일 가까운 빠른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고속도로에는 자동차들이 없어 모든 것이 느릿해 보였다. 때는 2004년 가을, 나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앰허스트에 있는 앰허스트 칼리지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사실 운전을 하는 내내 나는 단풍 구경보다는 방금 떠나온 예일 로스쿨에 관한 상념에 젖어 있었다. 뉴욕에서 자동차를 몰고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의 예일 대학교 로스쿨을 찾아가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렌터카의 네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한번 가봤으면 했던 로스쿨이었으니, 나는 그저 잠시 둘러본 뒤 점심이나 해결하고 갈 생각이었다. 헌데 로스쿨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만난 경비원 아저씨 덕분에 내 계획은 상당히 흐트러졌다. 그 아저씨는 마치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듯, 어디서 왔는지,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어딜 가보고 싶은지를 친절하게 묻고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안내를 해 주었다. 책에서만 만났던 몇몇 교수들 이름을 대다가 ‘The Lost Lawyer’<sup>1)</sup>

1) Anthony T. Kronman, *The Lost Lawyer-Failing Ideals of the Legal Profess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를 지은 앤터니 크론만 얘기를 했더니, 그는 크론만 교수가 최근 학장을 마치고 지금은 안식년인데 아침에 학교에 잠깐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 하면서 그 연구실로 불쑥 전화를 하기까지 했다. 다행히(?) 통화가 안 되었기 망정이지 자칫 했으면 나는 경비원 아저씨 덕분에 앤터니 크론만 예일 로스쿨 전 학장과 예정에 없는 인터뷰를 하게 될 뻔했다.

로스쿨 건물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동안 나는 인상적인 모습을 하나 발견했다. 건물 가운데 고즈넉한 중정(中庭)이 있는데, 그 안뜰이 내려다보이는 2층과 3층에 내게도 이름이 익숙한 유명 법학자들의 연구실이 나란히 있었던 것이다. 브루스 애커만, 로버트 고든, 스티븐 카터. 주지하듯 미국의 법학교육사에서 예일 로스쿨은 매우 독특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 1930년대 이후 법현실주의 운동(Legal Realism movement)의 중심지였던 것에서 보듯이 그것은 “미국에서 가장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로스쿨”<sup>2)</sup>로서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선에 봉사하는 법연구와 법교육의 명실상부한 대표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예일 로스쿨의 그러한 전통을 잇고 있는 대표적인 법학교수들의 연구실 앞에서 나는 이번 여행의 계기가 된 질문들 중 하나를 떠올렸다. ‘아직 그 시작도 요원해 보이는 대한민국의 로스쿨체제에선 언제쯤 이처럼 이론적이고 학술적이며 동시에 사회적 이익보다는 공공선에 봉사하는 일류 로스쿨의 전통이 확립될 수 있을까?’<sup>3)</sup>

2) 이 표현은 Laura Kalman, *Yale Law School and the Sixties: Revolt and Reverberations*(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5) 제9장 ‘The Most Theoretical and Academically Oriented Law School in America’에서 온 것이다. 그밖에 예일 로스쿨의 역사에 관해서는 Antony T. Kronman ed., *History of the Yale Law School*(Yale University Press, 2004)를 참조할 것.

3) 물론 예일 로스쿨에 관해서는 상찬(賞讚)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소위 법과 근대화 프로젝트의 근거지였던 예일 로스쿨은 급진적인 학생운동의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로스쿨 도서관의 화재를 겪은 뒤인 1973년을 전후하여 위 프로젝트의 주역이었던 일군의 젊은 법학자들(데이비드 트루백, 리차드 에이블, 윌리엄 펠스터너 등)을 승진에서 탈락시켜 내쫓게 된다. 1960년대 중반 시작된 미국의 법과사회운동(Law & Society movement)에서 이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던 이들은 이후 자유주의적 법치주의(liberal legalism)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비판을 목표로 1976년 비판법학운동(Critical Legal Studies movement)을 결성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Kalman, 앞의 책, 제9장 참조)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준 전미변호사재단(American Bar Foundation)의 Bryant Garth 전 소장에게 감사한다. Garth 교수는 2005년부터 LA의

1층으로 내려와서 로스쿨 식당에서 샌드위치를 먹는데, 방금 2층에서 보았던 헌법정치학자 브루스 애커만 교수 연구실 앞의 자그마한 안내문이 자꾸만 생각났다. “애커만 교수는 연구와 집필에 몰두하기 위하여 매일 오전 중에는 상담을 받지 않으니, 학생이나 내방객은 오후에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정치철학과 헌정사 그리고 실정헌법해석학을 중흥으로 넘나드는 애커만 교수의 저술들을 통하여 나는 이미 이중적 민주정치(dualist democracy)라는 미국식 헌법정치의 진수를 배운 적이 있었다.<sup>4)</sup> ‘만약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로스쿨에서 봉사할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그때 내 연구실 앞에도 그와 같은 안내문을 붙일 수 있을까?’ 이 질문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갑자기 그해 여름 내내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떠올라 씩씩하게 입맛을 다시고 말았다.

내가 학기 중에 짬을 내어 엠허스트 칼리지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까닭은 일차적으로 그해 봄에 있었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속칭 NURI사업)에서 떨어진 후유증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었다. 사실 기대대로 되었다면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HILS) 및 법학부의 동료들과 함께 나는 대한민국 로스쿨 교육의 예행연습에 해당하는 법학교육 실험 프로젝트에 돌입했어야만 했다. 2002년 출범한 HILS는 미국법을 가르치는 전문대학원이었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학교육개혁에 자극제가 될 여지가 충분했다. 이 점에서 나는 노무현정부가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NURI 사업을 추진한 것을 천재일우의 기회로 받아들였다. 2004년부터 5년 동안 한동대학교 법학교육 실험프로젝트에 충분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프로젝트의 완료시점에 맞추어 HILS에 한국법 과정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한국법 로스쿨을 출범시킬 수도 있으리라고 나는 기대했다. 2004년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의 개혁 작업이 그 때쯤이면 완결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호사다마(好事多魔)랄까? 그해의 NURI사업에서 나를 포함한 한동대

Southwestern Law School에서 학장으로 일하고 있다.

4) Bruce Ackerman, *We the People I/II-Foundations/Transforma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1998.

학교의 프로젝트 준비팀 일동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신설 지방대학으로서 교육혁신의 선두에 서은 한동대학교가 NURI사업에서 탈락한 것은 학교 안팎에서 큰 화제가 되었을 만큼 충격파가 적지 않았다. 나중에 알아보니 실패의 핵심원인은 마지막 순간에 프로젝트 준비팀이 상황을 낙관하는 바람에 학교 전체를 한 사업으로 묶는 안전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다. 대학교 전체가 아니라 단위사업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지방대학혁신역량을 강화하겠다는 NURI사업의 취지를 프로젝트 준비팀과 학교 당국이 전반적으로 잘못 이해한 책임이 컸다. HLS와 법학부를 중심으로 별도의 법학교육 실험프로젝트 계획서를 마련했음에도 결국 제출하지 않았던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던 셈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NURI 사업을 통해 한동대학교에서 법학교육 실험프로젝트를 할 수 없게 된 것이 참으로 아까웠다. 프로젝트 준비팀에 속해 있었으면서도, 나아가 별도의 프로젝트 계획서를 마련해 놓았으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확실하게 승부를 걸지 못한 채, 그저 만연히 시세에 맡기는 선택을 했던 내 자신이 끔찍하게도 한심스러웠다. NURI 프로젝트가 좌절된 4월부터 여름 방학이 끝날 때까지 나는 자책감과 무력감에 휩싸여 피폐하게 지냈다. 그러자 마음 한 구석으로부터 ‘이름 없는 신설 지방대학에 몸을 던졌던 5년 전의 선택이 과연 잘한 것이었을까?’하는 자문(自問)이 슬금슬금 기어 나왔다. ‘사법개혁이니 로스쿨이니 하는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그냥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타자윤리학과 공화주의 헌법이론 공부에나 매진할까?’하는 생각도 새록새록 들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내 복잡한 심사를 알 턱이 없는 HLS의 미국법 동료 교수들은 뜻다운 대한민국 청년들을 미국 법률가로 양성하는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온 정성을 쏟고 있었다.

## II. 왜 앰허스트 칼리지였는가?

그러다가 가을 학기가 퀘도에 오를 때쯤에야 나는 비로소 마음을 추슬러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었다. 비록 한동대학교에서 미국법 로스쿨과 한국법 로스쿨을 모두 추진해보려던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999년 이후 당시까지 거둔 성과가 모두 쓸모없게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HILS의 초기 기획과 인가취득, 설립준비와 교수충원, 학생모집과 학사운영의 모든 과정에 세세하게 관여하면서, 미국 로스쿨 교육의 형식과 실질에 관하여 속속들이 배우고 또 성찰하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HILS의 초대 원장이었던 린 버자드(Lynn R. Buzzard) 교수는 교수진 구성, 시간표 작성, 공간 배치, 후원그룹 개발, 각종 이벤트 활용에 이르기까지 로스쿨 교육의 다양한 측면들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대개 외부에는 미국 로스쿨의 단순한 복사판으로 알려져 있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HILS는 현재의 미국 로스쿨 교육에 대한 일정한 반성 위에서 출범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버자드 초대 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세기 후반 들어 가히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된 미국법의 상업화와 미국 법률가집단의 권력화를 통탄해 마지않았고, 그 핵심 원인으로서 미국 로스쿨 교육이 미국법의 가치적 토대를 적극적으로 붕괴시켰던 것을 거듭 지적했다.<sup>5)</sup> 법학교수로서 그는 소크라테스 문답교육과 같이 20세기의 미국 로스쿨 교육이 거둔 긍정적인 성과를 보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무너진 미국법의 가치적 토대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에 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이해했다. 그는 여

5) 국내에는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처럼 미국 로스쿨 교육에 대한 상당히 보수적인 비판론은 현재 미국의 법학교육계 내부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Harry T. Edwards, “The Growing Disjunction Between Legal Education and Legal Profession”, *Michigan Law Review* 91, 1992 ; Mary Ann Glendon, *A Nation Under Lawyers: How the Crisis in the Legal Profession Is Transforming American Socie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 Albert W. Alschuler, *Law without Values: The Life, Work, and Legacy of Justice Holm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최봉철 역, 홈즈 평전-미국법의 사이비영웅, 청림출판, 2008) 등을 볼 것.

러 가지 대안들 중 하나로서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한 윤리적 법률가운동과 함께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한 로스쿨 설립운동을 이십여 년째 추진하고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HLS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물론 로스쿨 교육에 기독교적 가치를 연결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점은 HLS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독교적 가치를 로스쿨 교육과 연결시키는 것이 그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이에 관하여 버자드 원장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을 전공하면서 30년 넘게 로스쿨 교육에 종사해 온 노련한 헌법교수답게 도덕적 가치와 법의 자율성을 실천적으로 연결하는 숙련된 노하우를 곳곳에서 보여 주었다. 그로부터 나는 장래에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한 로스쿨 교육이 시도된다면 써먹을만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었다.<sup>6)</sup>

그러나 버자드 원장을 비롯한 미국법 동료 교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HLS의 교육은 개원 2년 차부터 심각한 위기에 부딪혔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언어적 장애가 큰 걸림돌이 되었던 개원 첫 해를 지나고 어느 정도 커리큘럼이 안정되자,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미국)변호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학생들의 이러한 질문은 직업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직업적 관심이 제기되자 법에 대한 다른 관심들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생전 처음 로스쿨 교육을 경험해 보는 나에게 이와 같은 직업적 관심의 압도는 생소하면서도 흥미롭기 짝이 없었다.

6) 대한민국의 법학교수들 가운데 미국 로스쿨을 다녀본 분들은 많고, 혹 미국 로스쿨에서 가르쳐 본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 로스쿨을 만드는 데 참여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나는 귀한 배움의 기회를 준 린 버자드 HLS 초대 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린 버자드 교수는 듀크 대학 졸업 후, 듀크 로스쿨과 드폴 로스쿨에서 공부한 뒤에 전미기독교법률가협회(Christian Legal Society)의 사무총장으로 오랫동안 일했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캠벨대학교 로스쿨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다.

편의상 구분하자면, 법학교육에서 학생들이 법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① 이론적 관심, 즉 ‘무엇이 법인가?’를 중심에 놓는 태도와 ② 실천적 관심, 즉 ‘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중심에 놓는 태도로 대별할 수 있다. 후자의 관심은 다시 ③ 윤리적 관심, 즉 ‘왜 법을 실현하지 않는가?’를 중심에 놓는 태도와 연결되고, 전자의 관심 또한 ④ 학술적 관심, 즉 ‘왜 그것이 법인가?’를 중심에 놓는 태도와 연결된다. 정상적인 법학교육이란 이 네 가지 법에 대한 태도를 전제한 가운데 그 모두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HLS에 입학한 학생들 대다수는 이 네 가지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압도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⑤ 직업적 관심, 즉 ‘법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중심에 놓는 태도였고, 로스쿨 교육 역시 당연히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전문직업으로서 법을 교육하는 로스쿨 체제에서 학생들이 직업적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법에 대한 이론적-실천적-윤리적-학술적 관심들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수준까지 직업적 관심이 압도적이 되면 법학교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로스쿨은 무엇이 법인지를 가르치는 ‘법-학교’(law-school)이지, 어떻게 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변호사고시학원’(cram school for bar exam)이나 ‘변호사연수기관’(attorney training institute)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학생들을 직업적 관심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이격(離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로스쿨제도의 모국인 미국의 법학교육사에서는 이 작업을 소위 케이스 메소드(case method)가 어느 정도 수행해왔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주요 판례들을 가르치는 귀납법적 사고훈련이 특히 로스쿨 1년차의 교육과정에 정착됨으로써 법은 일종의 유사과학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고, 적어도 그와 같은 법적 논리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학생들은 자신들의 지나라한 직업적 관심으로부터 어쨌든 이격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케이스 메소드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 특히 유대인을 비롯한 非와스프(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계에 대한 차별수단



으로서의 의미 등이 드러나면서<sup>8)</sup> 미국의 로스쿨 교육은 이론적·실천적·윤리적·학술적 관심들을 수용하는 다양한 보완책들을 시도해 왔다. 사회학적 법학에서, 법현실주의, 정책법학을 거쳐 법과사회운동, 비판법학운동, 법과경제운동 등에 이르는 일련의 법학운동들이 그 하나라면, 1980년대 이래 법조윤리강화론을 필두로 대단히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는 소위 ‘가치에 기초한 법학교육’(value-based legal education)은 다른 하나라고 할 수 있다.<sup>9)</sup> 전자는 이론적·학술적 관심을 위주로, 그리고 후자는 실천적·윤리적 관심을 위주로, 로스쿨 교육에서 케이스 메소드의 부족한 영역을 채우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로스쿨 교육은 학생들의 직업적 관심을 어느 정도 격리시키는 문제에 관하여 케이스 메소드를 중심에 두고 이론적·학술적 관심과 실천적·윤리적 관심이 상호 투쟁적으로 공조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10)</sup>

보수적인 기독교법률가들답게 버자드 원장을 비롯한 미국법 동료 교수들은 직업적 관심에 대한 학생들의 집착을 기독교적 가치토대와 관련된 실천적·윤리적 관심으로 돌리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이 과정에서는 HLS가 출범 초기부터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한 공동체적 분위기를 가꾸어 온 것이 큰 힘이 되었고, 2004년에 이르러 미국의 몇 주로부터 청원(petition)을 통한 변호사시험 응시를 허락받으면서 학생들로부터 제기된 위기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다. 하지

7) 이러한 과정에 관해서는 William P. LaPiana, *Logic and Experience: The Origin of Modern American Legal Education*(Oxford University Press, 1994)의 특히 4장을 볼 것.

8) Robert Stevens, *Law School-Legal Education in America from the 1850s to the 1980s*,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3, Ch. 6, 특히 pp.99-101

9)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에는 아직 이 가운데 전자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후자에 대한 관심은 빈약한 것 같다. 일례로 미국학연구소 편, 미국 사회의 지적 흐름-법(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은 매우 밀도 있는 노작이긴 하지만, ‘법현실주의, 법과사회운동, 비판법학, 법과경제, 로스쿨제도, 법과문학’만을 가지고 미국법을 ‘지배’하는 지적 흐름으로 이름 짓는 것은 조금 과도한 느낌이 있다. 이 점에서 1980년대 이후 특히 보수적인 지역 로스쿨들을 중심으로 실천적·윤리적 관심에서 가치에 기초한 법학교육이 시도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 미국 모델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미국법의 기업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1970년대 이전에 국한되는 것이다.

만 2003년 내내 HILS를 달구었던 위기사태의 전말을 관찰하면서 나는 로스쿨 교육에서 직업적 관심의 위치에 관하여 상당히 중요한 통찰을 얻었다. 그 핵심은 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직업적 관심에 매몰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이격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이었다. 기초법학자로서 훈련받은 내 관점에서 이 문제는 로스쿨 교육에서 법에 대하여 ⑥ 비판적 관심, 즉 ‘무엇이 법의 목적인가?’를 중심에 놓는 태도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질문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나는 비판적 관심을 주로 이론적·학술적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왔으나, 버자드 원장과 HILS의 동료들은 그것이 실천적·윤리적 관심의 연장선상에서도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처럼 로스쿨 학생들을 압도하는 직업적 관심의 위력을 가까이서 목격하게 되면서, 나는 HILS의 개원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로스쿨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 하나에 부딪히게 되었다. 전문 직업으로서 법을 가르치는 로스쿨 체제에서 로스쿨 학생들이 직업적 관심에 기우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따라서 학생들을 직업적 관심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이격시키지 못한다면 로스쿨 교육은 급속하게 변호사입시학원교육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 나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미국보다 조금 나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의 로스쿨체제가 사법연수원의 분할이 아니라 전문대학원체제로 가게 된다면, 미국 로스쿨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대규모의 법학교수집단이 로스쿨 교육의 증추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sup>11)</sup>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대

11) 미국의 법률가집단 내부에서 법학교수집단의 위상은 매우 특이하다. 유례가 없을 만큼 위계화 된 로스쿨들 가운데 중하위권 로스쿨의 법학교수들은 사실상 법학연구자집단의 일원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실무법률가집단에 포섭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상위권 로스쿨의 법학교수들은 엄청난 사회적 명성을 부여받는 엘리트집단이다. Laura Kalman은 특히 후자의 집단의 향배가 실무법률가집단과 일반 대학교수집단 사이에서 일종의 지식정치학적 긴장을 담아내는 기축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Laura Kalman, *Professing Law: Elite Law School Professors in the Twentieth Century*, in Austin Sarat, Bryant Garth and Robert A. Kagan eds., *Looking Back at Law's Centur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이는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로스쿨제도가 실무법률가집단과 일반 대학교수집단 사이에서 어떠한 지식정치학적 긴장을 산출할 것인가에 관하여 상당한 시사를 주는 대목이다.

한민국 법학교수집단의 법학교육방식이 과연 로스쿨 학생들을 직업적 관심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이격시킬 수 있느냐'였다. 만약 이 과업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의 로스쿨 교육은 출범과 함께 학생들이 제기하는 적나라한 직업적 관심에 휘둘리게 될 것이 분명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나는 두 가지 고민에 급속하게 빠져 들었다. 첫째는 학생들의 직업적 관심이 두드러지지 않는 법과대학체제에서 성장한 법학교수집단이 이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었다. 솔직히 나는 버자드 원장과 HLS의 동료들처럼 능숙하게 그 일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둘째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서 내가 과연 로스쿨 학생들을 직업적 관심으로부터 이격시키는 작업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였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처럼 HLS의 로스쿨 실험은 내게 나 자신의 법에 대한 기본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자문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이 기초법학자로서의 비판적 관심이라는 점은 명백했지만, 반드시 그것을 로스쿨 학생들의 직업적 관심과 맞세워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나는 조금씩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생각들 속에서, NURI 사업에 떨어져서 실의에 빠졌다가 어렵사리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던 나는 문득 미국의 학부교양대학(Liberal Art College)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들 중 하나인 앰허스트 칼리지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었다. 이러한 연상의 구체적인 계기는 2002년 6월말 캐나다 밴쿠버에서 법과사회학회 학술대회가 열렸을 때 앰허스트 칼리지에서 가르치는 오스틴 새럿(Austin D. Sarat) 교수를 만난 일이었다. 사형폐지론에 관한 새럿 교수의 신간 저서<sup>12)</sup>를 놓고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 찾아갔다가, 그의 발언 내용과 태도에 관심이 생겨 세션이 끝난 후에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그 대화 가운데 새럿 교수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법, 법이론, 사회사상'(Law, Jurisprudence and Social Thought:LJST)이

12) Austin Sarat, *When the State Kills: Capital Punishment and the American Cond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라는 흥미로운 학과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앰허스트 칼리지와 오스틴 새렛 교수의 이름이 생각나자 나는 무엇인가 흘린 듯이 인터넷을 통하여 LJST 학과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이것저것 알아볼수록 자꾸 더 알아보고 싶어졌고, LJST 학과를 이끌고 있는 자유인의 학문으로서의 법(Law as Liberal Art)이라는 모토에도 자꾸만 마음이 끌렸다.

앰허스트 칼리지, 오스틴 새렛, LJST 학과에 관해 탐문하면서 나는 어렵풋하게나마 로스쿨 교육에서 배척되기 십상인 법에 대한 이론적-실천적-윤리적-학술적 관심이 학술적 교양법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존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어차피 예일 로스쿨과 같은 이론적 학술적 로스쿨이 형성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 차라리 오스틴 새렛이 앰허스트 칼리지에서 개척하고 있는 방향을 대안으로 삼아 밀린 공부를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2004년 9월 한 달 동안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오스틴 새렛과 LJST 학과에 대한 자료들을 충실하게 읽었고, 대한민국 상황과 비교하면서 학술적 교양법학과정의 가치와 기능성에 대하여 내 나름의 관점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자료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게는 질은 매력과 함께 끝없는 두려움이 몰려 왔다. 대한민국 법학교수집단 전체가 로스쿨 개혁이 불러올 일대 회오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시점에, 비록 상상 일지언정 전혀 다른 기획을 떠올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마디로 나는 자꾸만 내 앞에 다가서는 앰허스트로 가는 길을 두고 눈앞에 닥친 로스쿨 개혁의 회오리에서 낙오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0월초가 되어 나는 오스틴 새렛 교수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그 이메일에는 대한민국의 사법개혁 현실, 그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앰허스트 칼리지의 LJST 학과에 내 자신이 관심을 가지게 된 맥락, 그리고 LJST 학과와 유사한 학과를 한국 상황에서 시도해 보는 것에 관한 내 나름의 기대와 우려를 피력했다. 새렛 교수는 금방 보내온 답장을 통해, 마치 내 나름의 고민을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환영의 뜻과 함께 격려의 의사를 표시했다. 내 이메일에 대해 새렛 교수가 곧바로 답장을 보내 준 것에 고무된 나는 두 번

제 이메일을 통하여 혹시 중간시험기간 즈음에 내가 앰허스트 칼리지를 방문한다면 한 번 만나줄 수 있겠느냐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마치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이웃을 대하듯이, 언제 오면 자신과 만날 수 있는지를 곧바로 알려주었고, 나는 비행기 표 등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로 그 중에 하루를 골라 오전에 1시간 반 정도 면담시간을 잡아 버렸다.

이렇게 해서 나는 2004년 10월말 예정에 없던 앰허스트 칼리지 방문을 시도하게 되었다. 만약 NURI 사업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었더라면, 직업적 관심에 관련된 HILS의 사례를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또는 밴쿠버의 학술대회에서 오스틴 새렛 교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머나먼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앰허스트까지 그 전에 단 한 번밖에 보지 못했던 미국 법학교수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사정들이 중첩된 까닭으로 나는 당시 로스쿨 개혁에서 낙오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자유인의 학문으로서의 범을 개척한다는 설렘을 함께 가진 채 낯선 앰허스트를 찾아가고 있었다. 점심 먹고 예일 로스쿨을 떠난 렌터카가 오색 단풍이 절정에 달한 앰허스트 칼리지 캠퍼스에 도착한 것은 이미 늦은 오후가 되어서였다.

### Ⅲ. 오스틴 새렛

허름한 숙소에 여장을 풀고 나는 곧바로 LJST 학과를 찾아 나섰다. 소담한 캠퍼스에서 위치를 찾는 것은 아주 쉬웠는데, 찾고 보니 그 학과는 제법 커다란 2층 타운 하우스에 정치학과와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 클라크 하우스로 불리는 그 집은 일찍이 앰허스트 칼리지에 기증된 것인데, LJST 학과의 창설자 중 하나인 오스틴 새렛 교수가 정치학과 교수이기도 해서 같은 공간을 정치학과와 함께 쓰고 있다고 했다. 새렛 교수의 연구실 앞에는 작은 화이트 보드가 있었는데, 매 시간마다 학생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재미있었다. 아마도 LJST 학과 재학생들 각각에 대한 튜터링 시간인 듯 했다.

새릿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다가 반응이 없어서 돌아 나오는데, LJST 학과의 여직원 이주머니와 마주쳤다. 그 분은 상냥한 미소로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새릿 교수는 출타중인데 나가면서 내가 오거든 주라고 맡겨 둔 유인물이 있으니 가져가라고 했다. 2층의 작은 주방을 개조해서 만든 작은 사무실에서 유인물이 담긴 봉투를 전해 주면서 그 여직원은 다음날 아침 오전 9시 반으로 예정된 면담시간을 환기시켜 주었다. 나는 새릿 교수가 남긴 유인물 봉투를 든 채로 기숙사와 도서관을 포함하여 앰허스트 칼리지 이곳저곳을 돌아보다가 간단한 저녁거리를 사서 숙소로 돌아왔다.

오스틴 새릿 교수가 제공한 유인물은 2001년 3월에 만든 LJST 학과의 전공안내서로서 일종의 내부 문서라고 할 수 있었다.<sup>13)</sup> 나는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그 문서를 정독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LJST 학과는 1992년 11월 교수단 전체 투표를 통하여 앰허스트 칼리지의 29번째 학과로 출범했다. 그 이전에는 1985년부터 'Law and Social Order'라는 명칭의 파일럿 프로그램이었다가, 1990년에서 1993년까지는 몇몇 재단의 지원을 받아 非전공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학과로 독립한 뒤에는 상당히 운영이 잘되어 2001년 현재 70명의 재학생이 있으며, 학과수업에는 연간 700여명의 학생들이 등록하여 앰허스트 칼리지에서 교수대비 수강생 숫자가 가장 많은 전공이 되었다.<sup>14)</sup> LJST 학과의 교수진은 정치학과 법학학위를 모두 가진 오스틴 새릿 교수와 철학과 법학학위를 모두 가진 토마스 커언스(Thomas Kearns) 교수가 각기 정치학과 철학과의 정교수직을 겸하고 있었고, 그 외에 4-5명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구성되어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법학학위와 함께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점이 이채로웠다.

홈페이지 등에서 내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LJST 학과는 인문교양학문의 하

13) LAW, JURISPRUDENCE & SOCIAL THOUGHT: A PROGRAM STATEMENT, Prepared by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Law, Jurisprudence & Social Thought, Amherst College, March, 2001.

14) 앰허스트 칼리지의 전체 등록 학생 숫자가 2010년 현재 17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LJST 학과의 규모를 짐작할만하다.

나로서 법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문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서 앰허스트 칼리지가 목표하는 인문교양교육에 LJST 학과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논증하고 있었다. 아마도 교수단 전체를 설득해야만 학과로 독립할 수 있었던 LJST 학과의 역사가 그러한 적극적 논증의 배경인 것 같았다. 구체적으로 논증은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법이란 삶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소재이므로 법을 통하여 인문교양학문의 근본적인 질문들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법학교육은 인문교양학문의 기본인 텍스트에 대한 철저한 독해, 문화에 대한 섬세한 해석, 실천적 지혜의 함양 등에 본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다.<sup>15)</sup> 이러한 논증에 기초하여 그 문서는 정치학이나 철학과, 심리학과 등에서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법학과목들을 결합하여 예컨대 ‘Law & Justice Program’과 같은 방식으로 교과과정을 만들어서는 인문교양학문으로 법을 가르치는 목적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sup>16)</sup>

그 문서는 이어서 LJST 전공의 교과목들이 크게 법이론, 해석실천, 법제도, 역사적·비교 문화적 관점의 네 분야로 구성된다는 점을 설명한 뒤, 구체적인 교과과정의 흐름을 소개하고 있었다. 전공은 모두 아홉 개의 교과목을 이수하면 되었는데, 한국으로 치면 법사회학(The Social Organization of Law)과 법사상사(The Image of Law in Social and Political Thought)에 해당하는 필수과목을 두 정교

15) 이 점에 관해서 오스틴 새렛은 별도의 단행본을 편집한 바 있다. Austin Sarat ed., *Law in the Liberal Arts*,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16) 물론 이 주장을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이에 관하여 나는 전미변호사재단에서 연구년을 보내던 2006년 봄 위스콘신 대학교를 방문하여 동 대학교의 전형적인 학제적 교양 법학 프로그램인 Legal Studies Program의 Donald Downs 정치학과 교수(프로그램 디렉터)를 인터뷰했다. 그는 앰허스트 칼리지와 비교하여 위스콘신 대학교와 같은 대규모 대학에서 학제적 교양법학 프로그램이 태동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맥락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어떤 모습이던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교수진(core faculty)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동 프로그램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http://www.ssc.wisc.edu/clsj/lsp/home.html>을 볼 것.

수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웠다. 마지막으로 그 문서는 LJST 전공이 흔히 Pre-Law로 불리는 로스쿨 예비과정이 결코 아니며, 바람직한 로스쿨 교육을 위해서도 법은 인문교양학문의 핵심으로 가르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그 문서는 법에 대한 통합적이고 학제적인 접근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시도함으로써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근본 문제들을 모두 담아내는 자유인의 학문으로서 법을 교육하는 것이 LJST 학과의 모토임을 분명히 했다.

밤늦게까지 오스틴 새렛 교수가 준 내부 문서를 정독하면서, 나는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유인의 학문으로서의 법이라는 LJST 학과의 모토에 설득당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특히 그 문서가 LJST 학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로스쿨들이 법학교육의 다양한 차원들을 부각시키지 못한 채, 좁은 의미에서 학생들을 변호사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대목에서는 일종의 통쾌감까지 느끼기도 했다.<sup>17)</sup> 사실 되짚어 생각해 보면 오스틴 새렛과 토마스 커언즈가 중심이 된 LJST 학과의 모델은 미국의 기초법학계에서 하나의 스캔들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LJST 학과는 비록 교수 예닐곱 명이 모여 학부생들을 가르치는 작은 학과였지만, 그것을 토대로 특히 이 두 기초법학자가 미국의 법학(교육)계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결코 작지 않았다. 법철학, 법사회학, 법과 문화이론의 영역에는 이미 앰허스트 학파(Amherst School)라는 명칭이 낯설지 않을 만큼 특히 오스틴 새렛을 중심으로 하는 일군의 기초법학자들이 단단한 기반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1990년대 초부터 LJST의 특강이나 학술대회를 무대로 이 두 사람이 매년 편찬해내고 있는 소위 앰허스트 기초법학시리즈의 책 제목들을 생각나는 대로 떠올려 보았다.<sup>18)</sup>

17) “법은 법률가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도 중요하다(law is too important to leave to the lawyers.)” 이에 관해서는 특히 좁은 의미의 ‘법과사회’ 운동 영역을 벗어나서 인문학 전반으로 시야를 넓힐 것을 주장하는 다음 두 글을 볼 것. (Marianne Constable, *On Not Leaving Law to the Lawyers*, Austin Sarat ed., 앞의 책(2004), pp. 69-83 ; Austin Sarat, *Crossing Boundaries-From Disciplinary Perspectives to an Integrated Conception of Legal Scholarship*, 앞의 책(2004), pp.84-106)

18) *The Fate of Law*(1991), *Law's Violence*(1992), *Law in Everyday Life*(1993), *The Rhetoric of Law*(1994), *Identities, Politics & Rights*(1995), *Legal Rights: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1996), *Justice and Injustice in Law*



다음날 아침 약속시간에 맞추어 나는 새릿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클라크 하우스 1층 거실을 개조한 그의 연구실에는 아침 햇살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중이었다. 새릿 교수는 나를 소파에 앉게 한 뒤, 그 맞은편의 작은 안락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의례적인 인사가 끝난 후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다. 무언가 서먹해서라기보다는 그 전날 밤 늦게까지 정독한 LJST 학과 전공안내서 덕분에 한국에서부터 가져 온 내 질문거리들이 대부분 해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데 새릿 교수는 특유의 약간 툭툭거리는 어조로 요사이 내 학문적인 관심이 무어나고 물어왔다. 나는 일단 헌법이론과 법률가정치 두 분야가 전공이라고 말하고, 특히 전자에 관해서는 1990년대에 하버마스를 따라 읽다가 ‘화자(話者)중심주의’에 실망한 뒤 공화주의로 공부 방향을 돌렸었는데, 2년 전 밴쿠버에서 새릿 교수를 만났을 즈음부터는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타자윤리학을 탐독하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레비나스의 타자윤리가 헌법이론에도 곧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받았고, 그 뒤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대화를 이어온 사람들처럼 레비나스의 타자인식론에서 ‘얼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고 토론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먼저 레비나스의 논리가 법다원주의를 근본적으로 근거지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지를 이야기 했고, 또한 어찌면 커먼로의 논리에 그 가능성이 이미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는 점도 이야기 했다.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이클 왈처의 다원적 평등주의와 니클라스 루만의 시스템이론에 관한 생각들로 이어져 갔다.

그러다가 나는 오스틴 새릿 교수를 만나면 꼭 물어야겠다고 다짐했던 질문

---

*and Legal Theory*(1997), *Law in the Domains of Culture*(1998), *History, Memory, and the Law*(1999), *Human Rights: Concepts, Contests, Contingencies*(2001), *Lives in the Law*(2002), *Law's Madness*(2003), *The Place of Law*(2003), *Law on the Screen*(2005), *The Limits of Law*(2005), *Law and the Sacred*(2006), *How Law Knows*(2006), *Forgiveness, Mercy and Clemency*(2008), *Law and the Stranger*(2010) 등. 이 시리즈는 1990년대에는 미시간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오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는 스탠포드대학교 출판부 등으로 옮겨져 나오고 있다.

을 드디어 꺼내 놓았다. 학문적 이력으로 볼 때, 새릿 교수는 매우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1970년대 초반 위스콘신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새릿 교수는 앰허스트 칼리지의 정치학과에서 가르치면서 주로 법정치학, 법사회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저술활동을 벌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갑자기 예일 로스쿨에 진학하여 J.D.를 다시 취득하고 앰허스트 칼리지로 돌아와 오늘날의 LJST 학과를 시작했던 것이다. 나는 우선 정치학자로서 충분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예일 로스쿨에 진학했던 이유를 물었다. 그의 답변은 LJST 학과 전공안내서를 읽으면서 내가 예상한 그대로였다. 법에 대하여 진정으로 통합적인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정치학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으로는 불충분했기 때문에 스스로 전문직업적인 법학교육을 받기로 결심했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예상했던 답변을 확인하면서 나는 이윽고 아마도 새릿 교수보다는 나 자신에게 더욱 중요한 질문이었을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말이죠 새릿 교수님. 예일 로스쿨을 마치시고 난 뒤에 왜 앰허스트로 돌아오셨지요? 이미 유명한 정치학자로서 최고의 로스쿨에서 법학학위까지 받으셨으니, 분명히 여러 일류 로스쿨들에서 초빙제약이 쇠도했을 것 같은데요. 작은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서 어린 아기들(young babies)과 계속 지내시기로 작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던가요?”

새릿 교수는 내가 질문 속에서 사용한 어린 아기들이라는 표현이 재미있었는지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한 일 분 정도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며 상념에 젖는 듯이 보였다. 답변을 기다리다 말고, 나는 앞서의 질문에 덧붙여 앰허스트로 가면서 내 스스로 풀어놓고 싶었던 속내를 드디어 털어 놓고 말았다. 요사이 한국에서는 사법개혁의 관점에서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시행한다고 범정부적인 위원회(사개위)가 활동하고 있고, 기실 나 자신도 지난 수년 간 로스쿨주의자로서 활동해 왔던 셈인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 HLS 학생들이 직업적 관심에 압도당해 있는 것을 확인한 뒤로는 왠지 마음이 자꾸 흔들

려서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나는 냇두리하듯 순식간에 늘어놓았다. 그리고 당신이 시작한 LJST 학과를 알게 된 뒤, 나 자신도 로스쿨보다는 ‘자유인의 학문으로서의 법’에 투신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과연 그것이 가당한 일인지 확신이 없다고도 투덜거렸다. 내가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나 같은 기초법학자에게 먼저 없는 길을 개척한 선구자로서 해 줄 충고가 없느냐는 것이었다. 그때 오스틴 새렛 교수가 했던 답변은 지금도 내 컷가에 쟁쟁하게 남아 있다.

“예일 로스쿨을 마치고 앰허스트 칼리지로 돌아와 LJST 학과를 시작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바로 ‘학문의 자유’였습니다. 로스쿨들에 가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전문직업교육의 틀 속에서는 아무래도 법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제약받기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바가 아무 것도 없으니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학문의 자유를 만끽하는 방향으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법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하는 마땅한 길입니다.”

오스틴 새렛 교수와의 면담을 마치고, 나는 보스턴으로 나와서 이틀을 머무른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보스턴에 있는 동안 하버드 로스쿨에도 가보았는데, 건물의 모습부터 예일 로스쿨과는 전혀 다른 것이 괜히 불편하게 느껴졌다.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포항의 한동대학교 캠퍼스로 돌아오는 동안, 나는 오스틴 새렛 교수가 던졌던 마지막 한 문장을 거듭 되뇌었다.

“Enjoy academic freedom as much as you can!”

#### IV. 비판법학자(기초법학자)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앰허스트에 다녀 온 것은 이후 내가 로스쿨 개혁의 소용돌이에서 기초법학자로서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귀중한 자원이 되었다. 그 이듬해인 2005년 여름

부터 1년 동안 나는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냈는데,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의 페퍼다인 로스쿨과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전미변호사재단(The American Bar Foundation:ABF)에서 각기 반년씩을 보내는 동안 ‘로스쿨 체제에서 기초법학자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非소송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위주의 윤리적 법학교육을 지향하는 기독교적 로스쿨(페퍼다인)과 사법이론 및 사법정책분야를 중심으로 40여 명의 법사회과학 전문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사법연구기관(ABF)을 두루 경험한 것은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다. 특히 ABF에서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기초법학 전문연구자들이 개최하는 집중세미나에 참여했던 것은 그 자체로도 많은 공부가 되었을 뿐더러, 로스쿨 체제에서 기초법학자들의 위치를 가늠하는데 크나큰 도움이었다.

내 생각에 로스쿨 체제에서 기초법학자들의 위치는 사회 속에서 법시스템의 정당성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법학교육과 법률가양성이 국가의 사법관료제에 제도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 기초법학자들은 법시스템의 정당성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관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법시스템이 국가의 사법관료제에 제도적으로 종속된 까닭에 법시스템의 정당성은 당연히 사법관료제 또는 국가 그 자체의 정당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 기초법학자들이 법시스템의 정당성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보다 사법관료제나 국가 그 자체의 정당성을 구명하는 문제에 연구를 집중했던 것은 이러한 사정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법학교육 및 법률가양성이 국가의 사법관료제에 더 이상 제도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로스쿨 체제에서는 법시스템의 정당성이 독자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 과제는 기초법학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법률가집단 전체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기초법학자들만이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비록 로스쿨 체제가 법에 대한 직업적 관심을 현실적인 출발점으로 받아들이더라도 그 관심을 기초법학적 방식, 즉 이론적-실천적-윤리적-학술적-비판적

관심으로 고양시키지 않는다면 법시스템의 정당성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로스쿨 체제에서 법시스템의 정당성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문제에 관하여 기초법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크게 네 가지 정도라고 생각했다. 로스쿨 체제의 바닥(①), 로스쿨 체제의 꼭대기(②), 로스쿨 체제의 위(③), 그리고 로스쿨 체제의 앞(④).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①은 각 로스쿨의 교육과정에서 1년차 핵심과목이나 법조윤리 등의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로스쿨 체제의 실천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고, ②는 예일 로스쿨과 같은 일류 로스쿨에서 실정법학과 연계된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로스쿨 체제의 정당성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③은 로스쿨 연합회나 변호사길드, 혹은 (법조일원화가 달성된 경우에) 법원이나 검찰이 설립한 연구기관 등에서 합리적 정책 활동을 중심으로 로스쿨 체제의 방향설정에 기여하는 것이고, ④는 학부교육과정에서 기초법학 그 자체의 연구와 교육을 중심으로 학술적 교양법학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로스쿨 체제에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것이다.<sup>19)</sup> 이 네 지점은 모두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로스쿨 체제의 근본 동력인 법에 대한 직업적 관심에 관해서 ①이 가장 친화적이고 ②, ③, ④로 갈수록 친화성이 떨어졌다. 따라서 기초법학적 관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적 관심에 관해서는 정반대로 ④>③>②>①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당연했다.

로스쿨 체제에서 기초법학자들의 위치에 관한 이와 같은 위상학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것일 수 있었다. 그것은 곧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안에 있어야 하고,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어야 한다는 소박한 논리에 다름 아니었던 까닭이다.<sup>20)</sup> 이 점을 확인하면서 나는 로스쿨 체제가 그 도입을 즐기치게 주장

19) 나는 흔히 Pre-Law로 불리는 로스쿨 예비과정은 기초법학자들의 생계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로스쿨 체제에서 기초법학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법시스템의 정당성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일과 별 상관없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그것은 로스쿨 체제의 ‘밑’일 뿐이다. 이에 관해서 유사한 견해로는 김종철, 로스쿨 체제 하에서 교양법학교육의 필요성과 범위(법과사회 제35호, 2008), 특히 38-40면 참조.

해 오던 몇몇 대표적인 기초법학자들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법시스템 내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근본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혁명적인 변화라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결단은 법에 대한 직업적 관심과 비판적 관심 중 무엇을 따를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로스쿨 체제 안에 있기 위해서는 전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고, 후자를 앞세우기 위해서는 로스쿨 체제의 바깥에 서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에 더하여 나는 대한민국에서 로스쿨 체제의 도입이 사법개혁의 맥락에서 주장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 점에서 로스쿨 개혁은 법을 통해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넓은 의미의 ‘법과 사회 운동’(law & society movement)<sup>21)</sup>에서 일종의 토대적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법시스템 자체의 변혁이 없다면 법을 통한 사회변혁 그 자체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로스쿨 개혁의 논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스쿨 개혁은 단지 로스쿨 체제의 도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30여 년에 걸쳐 진행될 대한민국 사법체제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을 통한 사회변혁, 즉 넓은 의미의 법과 사회 운동을 이끌 비판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만약 법에 대한 비판적 관심 그 자체가 사라진다면, 로스쿨 체제가 상업적이고 비민주적인 방향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다. 곧 로스쿨 체제를 휩쓸게 될 법에 대한 직업적 관심의 위력을 염두에 둔다면, 경우에 따라 법에 대한 비판적 관심은 로스쿨 체제 그 자체와 투쟁하

20) 소위 ‘바깥을 사유하는 것’ 일반에 관해서는 이진경, 『외부사유의 정치학』(그린비, 2009) 참조.

21) 이에 관해서는 일단 다음의 문헌들을 볼 것. 양건, 「한국에서의 ‘법과 사회’ 연구」, 『법과사회』 창간호(1989); 양건, 「“법과사회”이론연구회의 어제와 내일」, 『법과사회』 제9호(1994); 홍준형, 「법치주의의 좌절과 법적 허무주의의 극복」, 『법과사회』 제7호(1993); 이국운, 「미국 법사회과학의 최근 동향-‘법과 사회’ 운동의 진로설정」에 관한 시사」, 『법과사회』 제16/17 합본호(1999); Frank Munger, Inquiry and Activism in Law and Society, *Law and Society Review* 35, 2001 ; Lawrence Friedman, The Law and Society Movement, *Stanford Law Review* 38, 1986 ; Robert Nelson, Law, Democracy, and Domination, *Law and Society Review* 35, 2001 등.

는 것까지를 감안하여 스스로의 위치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나는 법에 대한 비판적 관심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라고 이해했다.

법과대학 2학년 때 막스 베버를 읽으면서 법사회학을 전공하겠다고 결심했던 시절 이후 20년 동안, 나는 법에 대한 비판적 관심이 이끄는 대로 법과 사회 변동, 법조사회학, 사법정치학, 법률가정치 분야를 공부했었고, 헌법규범의 중요성에 눈을 뜨면서부터는 공화주의 헌법이론과 타자의 윤리학에 착념했다.<sup>22)</sup> 그런 나에게 로스쿨 체제의 바닥을 담당하는 것(①)은 무척이나 힘든 선택으로 다가왔다. 솔직히 나는 학생들을 압도할 법에 대한 직업적 관심에 대항하여 내 비판적 관심을 맞세워 버텨낼 자신이 없었다. HLS의 로스쿨 실험에서 버자드 원장이 보여주었듯이, 이 선택은 이론적·학술적·비판적 관심을 가진 기초법학자들보다는 실천적·윤리적 관심을 가진 실정법학자들(또는 실무법률가들에게) 더욱 잘 어울리는 것이었다. 케이스 메소드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적나라한 직업적 관심으로부터 이격시키는 일을 실험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라면 혹시 모를까<sup>23)</sup> 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나는 학생들의 직업적 관심에 대항하려다가 기초법학자로서의 비판적 관심을 대가로서 희생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따라서 나 역시 기초법학자라면 누구나 우선적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는 선택인 ②, 즉 예일 로스쿨과 같은 일류 로스쿨에서 실정법학과 연계된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로스쿨 체제의 정당성을 재생산하는 것에 기울어졌다. 그 정도의 위치라면 예일 로스쿨의 대표적인 법학자들이 그러하듯 법에 대한 기초법학자로서의 비판적 관심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도 로스쿨 체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로스쿨 체제의 출범 초기에 그러한 로스쿨이 확립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7년 이

22) 이국운, 「법사회학의 실천적 과제」, 『헌법과 사회 - 최대권 교수 정년기념논문집』(철학과 현실사, 2003).

23) 이국운,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법과사회』 제26호(2004).

후 본격화된 로스쿨 유치 경쟁 속에서 종래의 명문 법과대학들은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직업적 관심에 부응하려는 방향으로 실무 법률가들을 대거 영입하기 시작했다. 최소한 그동안의 명문 법과대학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경세’(經世)의 법학연구 전통에 입각하여 로스쿨 체제가 직업적 관심에 휘둘리지 않도록 애쓸 것으로 기대했던 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중에도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법시스템에서 기초법학자들의 양성통로였던 명문 법과대학들의 학술대학원과정이 로스쿨 체제의 시행과 함께 사실상 동면상태에 돌입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감내하기 힘들었다.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나는 로스쿨 체제에서 기초법학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위치로서 ③, 즉 로스쿨 체제와 연결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바깥에 존재하는 독립된 연구기관이 상당한 경쟁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전미변호사협회(The American Bar Association:ABA)에서 설립한 독립공익재단을 모태로 하는 ABF는 2006년 현재 40여 명의 전임 연구자들을 거의 대부분 기초법학자들로 채우고 있었다. 법사회학, 법정치학, 법사학 분야만이 아니라 심지어 법이론, 정치철학, 법여성학, 법종교학 분야까지를 망라하는 이 전임연구자들의 절반은 어떤 형태로든 로스쿨 교육에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절반은 인문사회과학 각 영역들에서 고루 충원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기초법학자들은 다시 미국 법률가집단 안팎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수많은 연구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그 진행상황은 각 연구팀들이 주기적으로 생산하는 원내 보고서들(ABF working papers)과 앞서 언급한 수요세미나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토론되고 있었다. 나는 대한민국의 로스쿨 체제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나 법무부 등의 산하기관보다는 ABF와 같은 독립적인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기초법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그것은 법시스템의 정당성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에 기초법학자들의 법에 대한 비판적 관심을 가장 확실하게 결합할 수 있는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스쿨 체제의 제도적 착근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소망은 어디까지나 장래의 소망에 머무르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그러한 소망을 가진 나는 2007년 7월말 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점점 더 로스쿨 체제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나는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로스쿨을 준비하던 몇몇 법과대학의 초빙제의를 거둬 사양했으며, 그동안 함께 한동대학교 법학부를 섬겨 오던 두 실무가 출신 법학교수가 로스쿨로 전직하고 나자 현실적으로 ④, 즉 학술적 교양법학과정을 가지고 로스쿨 체제의 ‘앞’에 서는 선택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2007년 2학기 이후 나는 한동대학교 법학부를 자유인의 학문으로서의 법을 모토로 하는 독특한 법학교육 단위로 재구성하는데 앞장서서 헌신해 왔다. 앞에서 고백했듯이, 앰허스트 칼리지의 LJST 학과나, 오스틴 새릿 교수, 그리고 무엇보다 2004년 가을에 앰허스트를 다녀왔던 기억은 지난 3년 반 동안 내가 로스쿨 체제 하에서 기초법학자의 색다른 진로를 모색하는데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다. 그 누구도 내게 기초법학자로서의 비판적 관심과 로스쿨 교수로서의 직업적 관심 가운데 하나만 택하라는 난폭한 이분법을 들이댄 적은 없었지만, 나는 끊임없이 그 이분법을 의식했고, 적어도 기초법학자라면 근본적으로 전자를 후자에 앞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지난 3년 반 동안 한동대학교 법학부를 이처럼 특이한 방향으로 재구성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점 몇 가지를 피력함으로써 이 글을 맺고자 한다.

## V. 자유인의 학문으로서의 법(Law as Liberal Art)

먼저 주의할 것은 한동대학교 법학부가 학술적 법학교육과정을 시도하기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1999년 이래 그 교과과정에는 UIL 프로그램(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Law Program)이라는 일종의 미국 로스쿨 진학예비과정이 개설되어 있었는데, 초기에 미국 로

스쿨 1년차 과목들을 예습하는데 머무르던 이 프로그램은 2002년 HILS 출범 이후 미국법 과목을 The Survey of American Law I & II 정도로 축소하는 대신 다양한 기초법학과목들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동대학교 법학부를 학술적 교양법학과정으로 재구성하는 과제는 실질적으로 1998년 개설된 한국법 과정에 국한되었으며, 그마저도 이미 학술적 교양법학과정으로 개편된 UIL 프로그램의 선례를 참조할 수 있었다. UIL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협조해 준 HILS의 동료들도 매우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의 학문으로서의 법’을 모토로 법학부 교과과정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법학부 전임교수들은 장기간의 토의 끝에 일단 실정법교육은 헌법, 민법, 형법의 기본법 분야에 국한하기로 합의하고, 그 밖의 영역은 교수진의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강조점을 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비하여 기초법학 영역의 교육을 강화하여 법철학, 법사회학, 법과 정치 등의 기존 과목들과 함께 법학교전강독 등을 추가로 개설했고, 비교법과 국제법, 법사상사, 비교법사 등은 UIL 프로그램의 과목들로 제공하기로 했다. 가능하다면 기본법 교육 역시 학술적 접근을 강화하도록 했고, 이를 위하여 일부 교과목 명칭을 법학부의 모토에 어울리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법시험 준비에 몰두했던 고시생 학생들에게는 종래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하면서도, 모든 학생들에게는 로스쿨에 가서 배우지 못할 것들을 먼저 깊이 성찰해 두는 것이 장래 법률가가 되었을 때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리라는 점을 되풀이하여 강조하기로 했다.<sup>24)</sup>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영어로 운영되는 UIL 프로그램과 한국법 프로

24) 김종철에 따르면 로스쿨과 학부법학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학부의 교양법학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①전통적인 법학과목의 유지 ②외국어교육의 강화 ③인접학문과의 유기적 관계설정 ④다양한 교육방법의 개발. 즉 이 과정은 다양한 교양적 덕성을 기르되 법학적 지식과 인식을 교양적 덕성의 주요 특징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크게 보아 앰허스트 칼리지의 LJST 학과나 한동대학교 법학부가 지향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김종철, 앞의 논문(2008), 43-44면)

그램 사이에 공통영역을 마련한 결정이었다. 이것은 가능하면 더욱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법과 ULL 프로그램을 동시에 전공하도록 유도한 결정이었는데, 새로운 교과과정이 시작된 2008년 이후 그것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학술적 교양법학과정에서 이와 같은 다중 언어교육의 목적은 단지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강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 법제도와 법규범을 좀 더 비교적 관점에서 성찰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한국의 로스쿨에 진학하려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기타 외국의 로스쿨에 진학하려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재학생들의 특성을 다분히 고려한 결정이었다. 학생들의 진로 지도는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되, 로스쿨 진학 그 자체에 매몰되어 법학적성시험이나 LSAT 등에 매달리는 것을 결코 권장하지 않고, 좋은 법률가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을 학술적 방식으로 쌓는 것 자체에 관하여 자긍심을 가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과정 이외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학생들이 법에 대한 이론적·실천적·윤리적·학술적·비판적 관심을 포함하는 자유인의 학문으로서의 법에 끊임없이 노출되도록 교수들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다.<sup>25)</sup>

지난 3년 반 동안 한동대학교 법학부는 학술적 교양법학과정으로의 변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변경된 교과과정도 무리 없이 운영되었고, 학생들도 큰 동요 없이 변화에 적응해 왔다.<sup>26)</sup> 좁은 의미의 로스쿨 예비과정(Pre-Law)으로 전락할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지만 ‘자유인의 학문으로서의 법’에 대한 전임

25) 예컨대, 2010년 12월 2일 한동대학교 법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1회 ‘자유인의 교양으로서의 법’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움의 주제는 ‘사형에 대하여 함께 깊이 생각하는 하루’였다.

26) 한동대학교는 한 학년 신입생 전체를 무학과 무전공으로 선발하여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제도를 개교 이래 유지하고 있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66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채워야 하며, 한 전공은 33학점으로 구성되는데, 학생들은 졸업 2학기 이전까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전공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2학년 이후 학생들이 전공을 어떻게 선택하는가는 학내에서 각 전공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008년부터 새로운 교과과정을 적용한 법학부의 재학생 숫자와 전공과정 수강생 숫자는 그 이전에 비하여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수들의 일치된 합의가 그 경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다. 원래 한동대학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장점인 ‘공동체적 인성교육’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학술적 교양법학과과정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교양법학과과정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동대학교 법학부 역시 몇 가지 중대한 한계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한계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야말로 지난 3년 반 동안 진행된 이 특별한 법학교육실험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일반적인 차원에서 간략하게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sup>27)</sup>

첫째, 학술적 교양법학과과정을 학부과정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학술적 역량과 비판적 관심, 그리고 학술적 교양법학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의지를 두루 갖춘 법학교수의 확보이다. 법학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부 학생들은 여전히 많으며, 로스쿨 진학준비 등의 이유로 그 학습동기 또한 과거보다 낮지 않으므로, 학술적 교양법학과과정의 수요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로스쿨 이전 단계에서, 로스쿨 예비과정으로 전락할 위험을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다양한 기초법학과목과 非교과활동을 통하여 법에 대한 이론적·실천적·윤리적·학술적·비판적 관심을 양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역량을 갖춘 법학교수가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법에 대한 비판적 관심을 가진 대한민국의 기초법학자들이 로스쿨 체제에서 학부대학에 개설되는 학술적 교양법학과과정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둘째, 학술적 교양법학과과정은 결코 학부의 법학교육단위가 교과과정을 재구성한다고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부대학 또는 대학교 전체가 그 가치

27) 학술적 교양법학과과정을 개설함에 있어서 로스쿨을 개설한 25개 대학의 경우에는 학부에서 어떤 형태로도 법학학위과정을 개설할 수 없다는 법적 제한이 근본적인 한계가 될 수 있다. 로스쿨 체제의 순조로운 정착 및 특히 로스쿨을 개설하지 못한 대학들을 위한 배려로서 이 법적 제한이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로스쿨을 개설하지 못한 대학에서는 기존의 ‘법학사’ 학위과정을 활용하고, 로스쿨을 개설한 대학에서는 예컨대 ‘문학사’나 ‘정치학사’와 같은 다른 학위과정을 활용하여 학술적 교양법학과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와 중요성을 인식할 때 비로소 일정한 성과가 담보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이루어진 한동대학교 법학부의 교육실험은, 앞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호적인 환경에서 진행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한동대학교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학부교육 전체가 아직 ‘자유인의 교양교육’이라는 목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유인의 학문으로서의 법’이라는 모토는 근본적으로 대학교육, 특히 학부교육 전체를 ‘자유인의 교양교육’(liberal art education)으로 이해하는 풍토에서 가장 잘 꽃필 수 있다. 학부교육 전체가 ‘자유인의 교양교육’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이라면, 오스틴 새렛 교수가 이끄는 앰허스트 칼리지의 LJST 학과와 같은 모델을 대한민국의 기초법학자들이 재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셋째, 학술적 교양법학과정은 필연적으로 법학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정의 재건과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직업적 관심의 압도 속에서 명문 법과대학의 학술대학원과정이 동면상태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가 결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시스템의 정당성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은 오로지 기초법학자들만이 달성할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에 대한 이론적·실천적·윤리적·학술적·비판적 관심을 한껏 고양시킬 수 있는 학술법학 대학원과정이 하루바삐 부활하고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향후 30여 년에 걸쳐 진행될 대한민국 사법체제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이끌 비판적 기초법학자들의 탄생지가 되어야 한다. 학술법학연구과정을 설치한 로스쿨들을 포함하여 일반대학원의 법학학위과정을 가진 대학들 전체가 법학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 조속히 대규모의 투자를 감행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로스쿨 체제의 미래는 그리 밝을 수 없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종철, 「로스쿨 체제하에서 교양법학교육의 필요성과 범위」, 『법과사회』 제35호, 2008.
- 미국학연구소 편, 『미국 사회의 지적 흐름—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양건, 「한국에서의 ‘법과 사회’ 연구」, 『법과사회』 창간호, 1989.
- \_\_\_\_\_, 「‘법과사회’이론연구회의 어제와 내일」, 『법과사회』 제9호, 1994.
- 이국운, 「미국 법사회과학의 최근 동향—‘법과 사회’ 운동의 진로설정에 관한 시사」, 『법과사회』 제16/17 합본호, 1999.
- \_\_\_\_\_, 「법사회학의 실천적 과제」, 『헌법과 사회—최대권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철학과 현실사, 2003.
- 이국운,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법과사회』 제26호, 2004.
- 이진경, 『외부—사유의 정치학』, 그린비, 2009.
- 홍준형, 「법치주의의 좌절과 법적 허무주의의 극복」, 『법과사회』 제7호, 1993.
- Ackerman, Bruce, 1991/1998, *We the People I / II—Foundations/Transforma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 Alschuler, Albert W., 2002, *Law without Values: The Life, Work, and Legacy of Justice Holm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최봉철 역, 2008, 흙즈 평전-미국법의 사이비영웅, 청림출판).
- Constable, Marianne, 2004, “On Not Leaving Law to the Lawyers”, Austin Sarat ed., *Law in the Liberal Arts*, Cornell University Press, pp.69-83.
- Edwards, Harry T., 1992, “The Growing Disjunction Between Legal Education and Legal Profession”, *Michigan Law Review* 91.
- Friedman, Lawrence, 1986, “The Law and Society Movement”, *Stanford Law Review* 38.
- Glendon, Mary Ann, 1994, *A Nation Under Lawyers: How the Crisis in the Legal Profession Is Transforming American Society*, Harvard University Press.
- Kalman, Laura, 2002, “Professing Law: Elite Law School Professors in the Twentieth Century”, in Austin Sarat, Bryant Garth and Robert A. Kagan eds., *Looking Back at Law's Century*, Cornell University Press.

- Kalman, Laura, 2005, *Yale Law School and the Sixties: Revolt and Reverberation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5.
- Kronman, Anthony T., 1993, *The Lost Lawyer-Failing Ideals of the Legal Profess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Kronman, Anthony T. ed., 2004, *History of the Yale Law School*, Yale University Press.
- LaPiana, William P., 1994, *Logic and Experience: The Origin of Modern American Legal Edu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Munger, Frank, 2001, "Inquiry and Activism in Law and Society", *Law and Society Review* 35.
- Nelson, Robert, 2001, "Law, Democracy, and Domination", *Law and Society Review* 35.
- Sarat, Austin & Kearn, Thomas eds, 1991, *The Fate of Law*,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arat, Austin & Kearn, Thomas eds, 1992, *Law's Violenc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arat, Austin & Kearn, Thomas eds, 1993, *Law in Everyday Lif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arat, Austin & Kearn, Thomas eds, 1994, *The Rhetoric of Law*,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arat, Austin & Kearn, Thomas eds, 1995, *Identities, Politics & Right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arat, Austin & Kearn, Thomas eds, 1996, *Legal Rights: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arat, Austin & Kearn, Thomas eds, 1997, *Justice and Injustice in Law and Legal Theor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arat, Austin & Kearn, Thomas eds, 1998, *Law in the Domain of Cultur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arat, Austin & Kearn, Thomas eds, 1999, *History, Memory, and the Law*,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arat, Austin & Kearn, Thomas eds, 2001, *Human Rights: Concepts, Contexts, Contingenci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arat, Austin, Lawrence, Douglas, & Umphrey, Martha Merrill eds., Thomas eds, 2002, *Lives in the Law*,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arat, Austin, 2002, *When the State Kills: Capital Punishment and the American Cond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rat, Austin, Lawrence, Douglas, & Umphrey, Martha Merrill eds., 2003, *Law's Madnes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arat, Austin, Lawrence, Douglas, & Umphrey, Martha Merrill eds., 2003, *The Place of Law*,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arat, Austin ed., 2004, *Law in the Liberal Arts*, Cornell University Press.
- Sarat, Austin, 2004, "Crossing Boundaries-From Disciplinary Perspectives to an Integrated Conception of Legal Scholarship", Sarat, Austin ed., 2004, *Law in the Liberal Arts*, Cornell University Press, pp.84-106.
- Sarat, Austin, Lawrence, Douglas, & Umphrey, Martha Merrill eds., 2005, *Law on the Screen*, Stanford University Press.
- Sarat, Austin, Lawrence, Douglas, & Umphrey, Martha Merrill eds., 2005, *The Limits of Law*, Stanford University Press.
- Sarat, Austin, Lawrence, Douglas, & Umphrey, Martha Merrill eds., 2006, *How Law Knows*, Stanford University Press.
- Sarat, Austin, Lawrence, Douglas, & Umphrey, Martha Merrill eds., 2006, *Law and the Sacred*, Stanford University Press.
- Sarat, Austin & Hussain, Nassar, 2007, *Forgiveness, Mercy and Clemency*, Stanford University Press.
- Sarat, Austin, Lawrence, Douglas, & Umphrey, Martha Merrill eds., 2010, *Law and the Stranger*, Stanford University Press.
- Stevens, Robert, 1983, *Law School-Legal Education in America from the 1850s to the 1980s*,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Law, 2001, "LAW, JURISPRUDENCE & SOCIAL THOUGHT: A PROGRAM STATEMENT", *Jurisprudence & Social Thought*, Amherst College.



<Abstract>

## A Road toward Amherst

Lee, Kuk-Woon\*

This article is for fostering the legal academism which focuses on fundamental studies of law under the American style professional law school system in Korea. As one of the proclaimers of the new legal education system, the author begins the article with a personal recollection of a journey to the Amherst College, which has been done in the late fall of 2004. The aim of the journey was to meet prof. Austin Sarat and be told about his unique legal education unit, the department of Law, Jurisprudence and Social Thought (LJST). Since the author had found that the introduction of a professional law school system in Korea could surely make some bad effects, especially to the academic infrastructure of law and legal education in Korea, the journey was likely to be said as an attempt to find out some alternatives for the current academic graduate school system of law in Korea. What the author has realized from the journey was that the motto of LJST, “Law as Liberal Art,” could be the best candidate for the slogan of the academic legal education, particularly on undergraduate level even in the professional law school system. The rest of the article is devoted to explaining how the undergraduate department of law at Handong University, for example, has been reorganized after 2008 and what the lessons from the experience are. No matter what the threat of professionalism in law is, the academic foundation

---

\* Professor of Law, Handong University

of law should be guarded and developed by legal scholars who devote themselves to fundamental studies of law.

**[Key Words]** legal education, basic study of law, critical legal studies, liberal legal education, college legal education, law school, graduate law school in Korea, Amherst College, Austin Sarat

접수일 : 2011. 4. 1, 심사일 : 2011. 4. 5~4.12, 게재확정일 : 2011. 4.20